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76
----------	-----

2011년 7월 8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0년 11월 16일,

서윤기·김명신·조상호 의원외 60명 발의

나. 회부일자 : 2010년 11월 26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3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11년 4월 21일, 상정·보류)

제2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011년 6월 29일, 상정·보류)

제2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2011년 6월 30일, 상정·수정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서윤기 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서울특별시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과 주민이 협력하여 민주적 협치를 실현하고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이념을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제3조).
- 시장의 책무와 주민의 권리를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위원회의 주민참여, 공청회 등의 주민참여 및 예산편성의 주민참여를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제8조).
- 시정정책 토론 청구제를 규정함(안 제9조).
- 회의공개의 원칙과 주민의견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 주민참여기본계획 수립과 주민참여연구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와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제1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 용 훈)

가. 주요내용 및 필요성 검토

- 본 제정안은 시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 구성의 경우 공무원 비율을 3분의 1이하로 하고, 공청회·예산편성 등에 주민참여를 보장하며, 2500명 이상의 주민 연서에 의한 시정정책 토론헤정구제도를 도입하고,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 등 회의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며, 주민의견조사 실시 및 5개년 주민참여기본계획 수립과 주민참여연구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서울시 시정 전반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임.
- 주민참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계획의 결정에 관하여 영향을 미칠 의도로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라 할 것이며,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행정의 대응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며 서울시와 시민들 간의 협력관계를 증진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의 활성화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 과거의 권위적 행정, 공급자 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민주적 행정, 시민 중심의 행정을 위해 주민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며, 무릇 현대의 민주주의란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정치와 행정 과정에 참여하는 데 그 중요성이 있음.
- 다만, 주민참여는 행정비용의 증가, 계획입안 및 집행의 지연, 주민들 간의 갈등 유발, 특정 사익의 추구, 주민과 공무원 및 지방의원의 가치 상충 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음.
- 이는 주민참여의 본질적인 문제점 보다는 운영상 발생하는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가 담고 있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어떻게 운영하도록 하여 기대하는 목적과 효과를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나. 세부 내용 검토

1)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이념(안 제1조, 제2조, 제3조)

- 본 조례안은 안 제1조(목적)에서 시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주적 협치를 실현하고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본 조례안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보여주고 있음.
- 다만, 입법기술적으로 본문 내용 중(‘행정’과 주민이 협력하여 민주적 협치를 실현하고) 주민과 협력하여 민주적 협치를 실현할 실질적 주체가 누구(무엇)인지에 대해 좀 더 명확한 용어로 표시(‘서울시’ 또는 ‘집행부’ 등)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 안 제2조는 “주민”(1호), “행정정보”(2호)¹⁾, “주민참여”(3호), “협력”(4호)에 대하여 정의를 제시하고 있으며, “주민”의 정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고 있음.

- 가.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나. 서울시특별시에 사업체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및 임·직원.
- 다.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관할 기관에 근무하는 자.
- 라. 타 지역 주민이라도 서울시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

- 우선 「지방자치법」 제12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적 구성요소로서의 ‘주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로 한정하고 있는바, 주민의 개념을 위와 같이 확대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미비할 뿐 아니라, 조례안과 같이 규정(제2조제1호 나목~라목)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의 상당 수가 본 조례 상 주민에 포함될 수 있고, 라목의 경우는 ‘이해관계’의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²⁾ 「지방자치법」 상에 규정된 주민의 정의와의 일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조례안 제2조 제3호에서는 “주민참여”를 정의하면서 ‘서울특별시민(이하 “주민”이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같은 조항에서 말하는 ‘주민’의 개념과 상충성 문제가 있음.

※ 조례안 제2조제3호에 따라 조례안 제2조제4호 이하의 조문에서의 ‘주민’은 ‘서울특별시민’을 의미하게 되므로, 조례안의 형식상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민의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게 됨.

- 안 제3조(기본이념)는 주민참여관련 기본조례안으로써의 기본이념을 제시하고 있는 바, 주민참여가 누구든지 평등하게 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과 아울러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근거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기본이념을 선언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주민참여는 적극적이고 활동력 있는 단체나 구성원들이 주도적으로 일방적인 목소리를 내고, 침묵하는 다수의 의견이 무시될 수 있다는 불합리성에 대비하여 서울시의 다양한 단체와 주민들이 공동의 문제해결과 공동의 책임을 분담하여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적 역할과 기능을 발휘할 때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1)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 2) 예를 들어 지방에 본점을 두고 있는 대기업이 서울에 지점을 두고 있는 경우, 조례안 제2조 제1호 나목의 규정만 놓고 보면, 서울시에 거주하는지, 서울시의 정책에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대기업의 대표자 및 임·직원 모두가 서울에 지점을 둔 회사의 직원이라는 이유로 ‘시민’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임.

2) 시장의 책무와 주민의 권리 규정(안 제4조, 제5조)

- 안 제4조(시장의 책무)는 주민참여 제도화,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 행정정보의 공개(제1항)와 주민참여의식의 고취 노력 및 연 1회 이상 정기적 점검사항의 의회 보고와 함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두고 있음.
- 본 규정에 대하여 시장의 주민참여제도화 및 의회보고의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제가 없다는 긍정적 의견과 시장에게 주민의 참여를 제도화하여야 할 책무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는 부정적 의견이 있음.

※ 법률자문결과

- ▷ 긍정적 의견 : ‘주민참여’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요소라 할 것이므로 시장으로 하여금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주민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는 책무 규정은 타당하며, 이행사항에 대한 의회보고의무도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지방자치단체장은 의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의 규정에 비추어 역시 문제가 없음.
- ▷ 부정적 의견 : ‘제도화’의 의미와 범위 자체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지방자치법상 주민이 행정기관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수단(주민투표, 조례의 제정과 개폐청구, 감사청구, 주민소송, 주민소환 등) 이외의 것을 말한다면,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며,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상 집행기관은 임기 동안 자신의 양심과 판단에 따라 정책을 결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주민은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기본적으로 선거를 통해 선출한 시의회를 통해 집행기관을 통제할 수 있을 뿐이므로, 시장에게 주민의 참여를 제도화 하여야 할 책무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음.

- 안 제5조(주민의 권리와 의무)는 주민은 시정에 관한 주민의 의견제시 권리와, 주민의 공유재산인 시의 정보를 받아볼 권리가 있으며, 시정에 참가하지 않는다고 불리한 대우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주민의 정보요구에 관해서는 정보공개 관련 법률 및 조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등을 통해 보장되고 있는 사항이며, 주민의 시정 참여와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규정은 지방자치의 본질적 요소라 할 수 있을 것임.

3) 위원회의 주민참여(안 제6조)

- 안 제6조는 서울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되는 주민참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6조(위원회의 주민참여) ①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구성은 공모제나 추천제 등 공개적인 절차에 의한 일반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의 구성은 여성, 장애인, 청소년 등 사회약자 및 직능별로 다양한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 분야의 남성 또는 여성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촉직 위원은 남녀비율의 차가 2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법령 및 타 조례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공무원의 수는 3분1 이하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령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는 그 기능에 따라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정례화 하여 운영한다.

- 현재 서울특별시에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자격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조례에서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 직위를 특정하고 있고, 이와 같이 특정된 사람 이외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모제나 추천제에 의한 일반주민의 참여보장, 다양한 위원의 균형 있는 구성, 위원 중 호선에 의한 위원장 선임의 경우 주민이 대표성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보다 민주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임.
- 다만, 법령에 의해 설치되는 위원회의 위원 선임에 있어 공모를 하거나, 일반주민이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나, 자칫 조례 규정에 얽매어 능력 있는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 아울러 안 제6조제2항의 본문 내용 중 ‘여성, 장애인, 청소년 등 사회약자 및 직능별로 다양한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소년에게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의사결정권을 부여할 수 있는 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법률자문 결과〉

- ▶ 긍정적 의견 : 법령에 의해 설치되는 위원회에 있어서, 해당 법령에 위원의 자격 및 선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면서, 구체적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위원을 선임함에 있어 공모를 하거나, 일반주민이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능함.
- ▶ 부정적 의견 : 각종 위원회 자체가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장애인복지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이거나, 특정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거나 또는 집행기관에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시 무조건 사회적 약자나 직능별로 다양한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는 것은 자칫 조례 규정에 얽매어 능력 있는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위촉위원의 경우 남녀 비율 차이가 20%를 넘지 않도록 특정 하는 경우, 위촉직 여성비율을 30% 이상 유지하도록 한 「서울특별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의 규정과 상충성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서울특별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10조(시정참여 확대) ①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정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시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공청회 등 주민참여 및 예산편성의 주민참여(안 제7조, 제8조)

- 안 제7조는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법령 및 타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사업이나 정책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 개별 법령 및 조례(「행정절차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도시기본계획조례」 등)에도 사안의 특수성을 반영해 공청회·토론회의 실시여부 및 그 운영방법 등이 규정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안 제8조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행정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도록 하는 것임.
-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2010년 11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모델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의무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도록 「지방재정법」 제39조가 개정(2011. 3. 8 개정, 2011. 9. 9 시행)된 바 있음.

〈상위법령 개정내용〉

지방재정법(현행)	지방재정법(개정) [2011.3.8 개정, 2011. 9. 9. 시행]
제39조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9조(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 2.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 3. 사업공모
 -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 성시 반영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따라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반영과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의 선언적인 의미가 아닌 실질적인 운용 을 위해서는 서울시의 규모와 특성에 맞게 그 절차 및 운영방법에 대한 연구검토를 통해 관련 조례 가 별도로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 권장('03. 7)이후 2004년부터 광주광역시 복구를 시작으로 2010. 6월 말 현재 총 102개(41.8%)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운영
-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표준(안) 통보('06. 8.17)이후 많은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 2009년부터 차츰 조례 제정 저조함

<연도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현황>

(기준 : '10. 6. 30/단위 : 단체 수)

계	'04	'05	'06	'07	'08	'09	'10	비고
102	2	4	24	42	18	10	2	

5) 시정정책 토론 청구제 도입(안 제9조)

- 안 제9조는 선거권 있는 2,500명의 주민연서를 통해 중요한 정책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 공청 및 설명회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이에 응하 고, 그 반영여부를 1개월 이내에 청구인 대표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시정정책 토론 청 구제 도입'에 관한 사항임.
- 이에 대하여 주민에게 정책토론권한을 부여할 지 여부 및 청구권 발동 최소 인원을 몇 명으로 할지는 입법권자의 결단으로 규정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의견(법률자문)과 함께, 집행기관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의회에 의해 통제될 수 있는 대의민주주의의 이념과 지방의회 존재 의의가 퇴색할 우려가 있다는 부정적 의견(법률자문)이 있었음.

※ 법령에서 공청회나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한 경우 이외에 주민이 직접 시장에게 시의 정책사업에 관한 토론, 공청 및 설명회 개최를 요구하는 것은 집행기관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의회에 의해 통제될 수 있는 대의민주주의의 이념에 반할 소지가 있으며,

시의회에서는 정책연구위원회를 두어 주요시책사업의 분석·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하고,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정책의 대안 제시 등 정책의 연구를 담당하게 하면서, 필요한 경우 토론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서울특별시의회정책연구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제10조) 시의회가 그 권한이자 의무인 집행기관 통제를 회피하게 되어, 지방의회 존재 의의가 퇴색할 우려가 있음.

○ 주민토론청구제도를 도입할 경우, 본 조례안이나 관련 조례의 별도 제정 등을 통해 ‘중요한 정책사업’이 무엇인지, 청구요건 및 절차와 연서인원 등의 구체적 적정성에 대한 연구검토를 통한 규정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본 조례안의 경우 선거권 있는 2,500명 주민연서 이외에 별다른 청구요건 및 절차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지방자치법상의 주민청구 제도의 경우는 청구인대표자의 공증을 위해 주민서명의 시행 전에 행정청에 의한 증명서 접수·교부행위를 의무화하고, 청구인대표자에 의한 주민서명기간의 제한, 청구공표를 통한 청구사항의 공지,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설정 등 청구요건을 심사하기 전에 거쳐야 할 사전절차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점과 대비됨(참고자료 ③ 참조).

※ 특히, 2,500명의 주민연서 요건이 천만 서울시의 광역행정의 여건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적정한지와 연서 요건의 적정규모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특히, 제9조제3항 및 제4항의 경우 시장이 토론·공청·설명회 실시 기한과 반영여부의 통지 기한을 1개월 이내로 하고 있으나, 정책은 그 사안에 따라서 단거나 중장기검토가 요구되는 등 다양한 사안이 있을 수 있는 바, 중장기적인 검토가 요구되는 사안에 있어서는 당해 기한의 촉박함에 따른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하겠음.

6) 회의 공개 및 주민의견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 제11조)

○ 안 제10조 제1항은 각종 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의록 및 회의결과, 안건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당해 규정 중 회의록의 공개에 대해서는 공개 내용과 범위 등을 유형별로 조율하여 비공개 대상정보를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음.

※ 법률자문결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록·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구체적으로 충실히 작성하도록 하면서도, 그 공개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의사결정과정, 내부검토자료, 개인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는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한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음.

- 안 제11조는 시장이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스스로 주민의 의견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을 조사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표한 후 1개월 이내에 조사결과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도록 하고 있음.
- 주민의견조사는 의사형성·정책수립·정책집행·정책평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책시행단계에서 그 중요성과 필요성이 높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임.
- 다만,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당초 조사취지와 시행여부가 불투명한 단계에서 불필요한 외부의 기대를 초래하는 등 부정적인 측면도 제기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조사결과에 대한 견해표명을 시장으로 하여금 강제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 하겠으며, 구체적인 견해표명의 범위, 조사내용, 공표시기 등 세부기준의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7) 주민참여기본계획 수립과 주민참여연구회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조, 제13조)

- 안 제12조는 시장으로 하여금 참여자치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임.
- 다만, 조제목과 본문의 용어 일원화(조제목 : ‘주민참여기본계획’, 본문 : ‘참여자치기본계획’)와 함께, 수립기간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획수립기간을 시장의 임기와 같게(5년→4년 등) 규정하는 방안에도 대해서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안 제13조는 주민참여기본계획을 연구·조사하기 위해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비영리민간단체 관계자, 행정 1부시장,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주민참여연구회를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기능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 또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임.
- 다만 위원 구성에 있어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의회 의견도 수렴될 수 있도록 보완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8) 다른 조례와의 관계와 시행규칙 조항 규정(안 제14조, 제15조)

- 안 제1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한 규정으로, 주민참여에 관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본 조례에서 정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과 다른 법령이나 조례와의 상충성이 있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임.
- 안 제15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토론청구제 등 조례를 통해 세부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시행규칙’에 위임을 할 경우, 집행부에서는 규칙 제·개정 등에 의해 본 조례의 실질적인 시행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볼 때, 본 조례안이 담고 있는 주요 사항들에 대해서는 향후 각각의 개별조례 제정 등을 통한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다. 종합검토

- 현행 지방자치제도가 국가로부터의 분권을 강조하면서 단체장의 권한을 지나치게 보장하는 반면, 단체장을 견제하는 의회의 역할이나 여타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이러한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해서는 그동안 미흡했던 주민자치의 활성화는 필요하다 할 것이나, 주민참여가 이해단체의 로비로 왜곡되거나, 의회의 존립이나 기능의 효율성을 오히려 저해하는 요소가 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음.
- 의회배제나 의회대체적 주민참여 보다는 가급적 의회와 연계된 상호보완적인 협력 및 역할분담관계로서 주민참여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각 조문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아울러 본 조례안의 효율적인 시행 및 적용을 위하여 시행일 및 적용례 등 부칙 규정의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김광수 위원) 주민의 정의가 너무 광범위하다고 여겨지며, 위촉직 위원의 남녀비율 차가 20%를 넘지 않도록 한 규정은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에 있는 규정과 상충된다고 보여지는데 의견은?

(서윤기 의원) 지방자치법 제12조는 주민의 정의라기보다는 주민의 자격을 규정하는 것이며, 일본의 사례를 보면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음을 참조해주시기 바람. 또한 위원회의 여성참여비율을 좀 더 확대하자는 취지이므로 상충성은 없다고 여겨짐.

(행정국장) 주민의 정의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또한 집행부도 여성참여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성격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봄.

(김광수 위원) 주민토론청구의 경우 집행부와 발의의원간에 입장차이가 많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의견은?

(서윤기 의원) 주민들이 주민토론청구제를 청구하더라도 어떤 정책결정을 좌우하지는 것은 아니고 시장과 집행부가 의견을 들어봐 달라는 제도로 이해해 주기 바람. 연서인원수가 적다고 주민들이 무분별하게 청구할 것이라는 것은 기우라고 봄.

(행정국장)토론청구제의 경우 중요정책을 결정할 때 장·단기적으로 검토할 의견이 많은데 이에 대해 시장이 의견을 내도록 강제 의무화하는 것은 상당한 혼란과 권한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여겨지며, 청구인 연서 규모도 서울시의 인구규모와 정책의 다양성에 비해 상당히 적다고 봄.

(김광수 위원) 주민참여계획 수립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는데 시장의 임기와 맞출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윤기 의원) 일리가 있음.

(진두생 위원) 본 조례안이 주민참여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의회의 위상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보는데 행정국장의 의견은?

(행정국장) 집행기관과 시의회 간에 견제와 균형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면 토론청구제같은 경우 의회 존재 의의를 훼손시킬 수 있다고 생각함.

(이지현 위원) 위원회마다 성격에 따라 여성위원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확실적으로 여성위원과 남성위원 비율을 정하는 것은 여성들의 성차별을 오히려 드러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찬성하지 않음?

(서윤기 의원) 깊이 검토해 보겠음.

(이지현 위원) 주민참여예산제는 상위법과 관련된 것인가?

(서윤기 의원) 지방재정법에 있음.

(행정국장) 별도의 조례 제정이 필요함.

(이지현 위원) 안 제10조 회의공개의 원칙의 경우 개인정보도 있을 텐데 포괄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

(행정국장) 포괄적 공개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서윤기 의원)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근거 법률에 근거하여 공개하면 됨.

(정승우 위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청소년이 위원으로 들어가는 부분과 사회약자 및 직능별이라는 문구 등 해석하기가 애매한 조문들이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서윤기 의원)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의 의견을 노인정책은 어르신들의 의견을 위원회 참여로 적극적으로 듣지는 취지임을 감안하여 주었으면 함.

(최호정 위원) 서울의 경우 아파트 단지 하나가 2,500세대가 넘는 곳이 많으며, 이익집단의 규모를 볼 때 2,500명의 청구인수는 너무 적다고 생각되는데?

(서윤기 의원) 재개발 재건축 같은 사안으로 비슷한 청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말씀으로 들리지만 제가 믿는 주민들은 신중하게 할 것이라 생각함.

(행정국장) 서울시의 경우 정책사업 대상이 너무 많고 시민들의 욕구가 분출하고 있어서 비용이나 행정력에 대한 측면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위원장) 많은 쟁점들이 의원간에 논의되고 있는데, 의원이 의원발의를 했으면 집행부에서 의원과 접촉하여 문제될 소지를 조정하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할 것임.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주민'의 범위 등 조문 용어의 명확화와, 타 조례와의 상충성 소지의 방지 및 '시정정책 토론 청구요건' 등을 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주민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주민"을 '서울특별시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함(안 제2조제1호).
-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의 합리성과 타 조례와의 상충성을 개선하기 위해 구성 위원의 자격을 조정하며, 위원 정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 시정정책 토론 청구요건 개선을 위해 청구연서 인원을 "2,500명"에서 "5,000명"으로 함(안 제9조 제2항).
- 회의록 공개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개시 발언한 위원들을 익명 처리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함(안 제10조 제1항 단서).

- 주민참여기본계획의 수립기간은 시장의 임기와 같도록 “5년”에서 “4년”으로 수정함(안 제12조).
- 부칙을 신설하여 조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후 시행하도록 하고 최초로 수립하는 주민참여기본계획의 기간은 계획개시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함(안 부칙 신설).
- 기타 조문의 명확화와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수정함.

7. 심 사 결 과 : 수정안가결(재석위원 7명, 전원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76
----------	-----

2011년 7월 8일

행정 자치 위원회

1. 수정이유

- ‘주민’의 범위 등 조문 용어의 명확화와, 타 조례와의 상충성 소지의 방지 및 ‘시정정책 토론 청구요건’ 등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민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주민”을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함(안 제2조제1호).
-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의 합리성과 타 조례와의 상충성을 개선하기 위해 구성 위원의 자격을 조정하며, 위원 정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 시정정책 토론 청구요건 개선을 위해 청구연서 인원을 “2,500명”에서 “5,000명”으로 함(안 제9조 제2항).
- 회의록 공개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개시 발언한 위원들을 익명 처리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함(안 제10조 제1항 단서).
- 주민참여기본계획의 수립기간은 시장의 임기와 같도록 “5년”에서 “4년”으로 수정함(안 제12조).
- 부칙을 신설하여 조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후 시행하도록 하고 최초로 수립하는 주민참여기본계획의 기간은 계획개시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함(안 부칙 신설).
- 기타 조문의 명확화와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수정함.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행정과”를 “시와”로 한다.

안 제2조 제1호를 ““주민”이란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를 말한 다.”로 하며, 안 제2조 제3호 중 “서울특별시민(이하 ‘주민’이라 한다)”를 “주민”으로 한다.

안 제6조제2항 중 “, 청소년 등 사회약자 및 직능별로”는 “ 등”으로, “위원은 남녀비율의 차가 20%를 넘지 않도록”은 “위원 정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으로 한다.

안 제9조 제2항 중 “2,500명”은 “5,000명”으로, 제3항 중 “청구에 응해야”는 “를 실시하여야”로 수정한다.

안 제10조 제1항 단서에 “다만, 발언한 위원들을 익명 처리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안 제12조 중 “참여자치기본계획”은 “주민참여기본계획”으로, “5년”은 “4년”으로 수정한다.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최초로 수립하는 주민참여기본계획의 기간은 계획 개시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서울특별시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과 주민이 협력하여 민주적 협치를 실현하고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서울특별시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와 주민이 협력하여 민주적 협치를 실현하고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p>가. 서울특별시에 주소로 두고 있는 자.</p> <p>나. 서울특별시특별시에 사업체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및 임·직원.</p> <p>다.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관할 기관에 근무하는 자.</p> <p>라. 타 지역 주민이라도 서울시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p>	<p>1. “주민”이란 서울특별시에 주소로 두고 있는 자를 말한다.</p> <p><삭제> <삭제></p> <p><삭제></p> <p><삭제></p>
<p>2.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p>	<p>2.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p>
<p>3. “주민참여”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의사형성 단계에서부터 집행하는 단계까지 서울특별시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의사를 반영하고 시와 주민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p>	<p>3. “주민참여”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의사형성 단계에서부터 집행하는 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시와 주민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p>
<p>4. “협력”이란 시가 해야 할 책임과</p>	<p>4. “협력”이란 시가 해야 할 책임과</p>

주민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상호보완하고 협조하는 것을 말한다.

제 3 조 (기 본 이 념) ① 주민참여는 주민의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해 누구든지 평등하게 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시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에 동등하게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삼는다.

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근거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 4 조 (시 장 의 책 무) ① 시장은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와 주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이행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 5 조 (주 민 의 권 리 와 의 무) ① 주민은 누구나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지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힘써야 한다.

② 시가 가진 정보는 주민의 공유 재산이며, 주민은 그 정보를 받아볼 권리가 있다.

③ 주민은 시정에 참가하지 않는다고 불리한 대우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주민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상호보완하고 협조하는 것을 말한다.

제 3 조 (기 본 이 념) ① 주민참여는 주민의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해 누구든지 평등하게 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시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에 동등하게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삼는다.

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근거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 4 조 (시 장 의 책 무) ① 시장은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와 주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이행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 5 조 (주 민 의 권 리 와 의 무) ① 주민은 누구나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지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힘써야 한다.

② 시가 가진 정보는 주민의 공유 재산이며, 주민은 그 정보를 받아볼 권리가 있다.

③ 주민은 시정에 참가하지 않는다고 불리한 대우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제6조(위원회의 주민참여) ①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구성은 공모제나 추천제 등 공개적인 절차에 의한 일반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의 구성은 여성, 장애인, 청소년 등 사회약자 및 적능별로 다양한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 분야의 남성 또는 여성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촉직 위원은 남녀비율의 차가 2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법령 및 타 조례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공무원의 수는 3분의 1 이하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령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는 그 기능에 따라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정례화 하여 운영한다.

제7조(공청회 등의 주민참여) ① 시장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법령 및 타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청회 또는 토론회에 사업이나 정책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주민참여) ①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구성은 공모제나 추천제 등 공개적인 절차에 의한 일반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의 구성은 여성, 장애인 등 다양한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 분야의 남성 또는 여성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촉직 위원 정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법령 및 타 조례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공무원의 수는 3분의 1 이하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령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는 그 기능에 따라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정례화 하여 운영한다.

제7조(공청회 등의 주민참여) ① 시장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법령 및 타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청회 또는 토론회에 사업이나 정책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 8 조 (예산편성의 주민참여)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행정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 9 조 (시정정책 토론 등의 청구)

① 주민은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 공청 및 설명회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시정정책에 대한 토론, 공청 및 설명회를 청구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 15조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있는 2,500명 이상의 주민 연서로 토론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

③ 시장은 토론, 공청 및 설명회가 청구된 주요정책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토론, 공청 및 설명회 청구에 응해야 한다. 이때 시장은 토론, 공청 및 설명회의 실무적인 개최 방안에 대하여 토론청구인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개최한다.

④ 시장은 토론, 공청 및 설명회 결과를 성실하게 검토한 후 반영여부를 1개월 이내에 토론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한다.

제 10 조 (회의공개의 원칙) ①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는 법령 및 타 조례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가 개최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의록 및 회의결과, 회의안건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단서 신설)

제 8 조 (예산편성의 주민참여)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행정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 9 조 (시정정책 토론 등의 청구) ①

주민은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 공청 및 설명회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시정정책에 대한 토론, 공청 및 설명회를 청구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 15조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있는 5,000명 이상의 주민 연서로 토론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

③ 시장은 토론, 공청 및 설명회가 청구된 주요정책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토론, 공청 및 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시장은 토론, 공청 및 설명회의 실무적인 개최 방안에 대하여 토론청구인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개최한다.

④ 시장은 토론, 공청 및 설명회 결과를 성실하게 검토한 후 반영여부를 1개월 이내에 토론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한다.

제 10 조 (회의공개의 원칙) ①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는 법령 및 타 조례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가 개최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의록 및 회의결과, 회의안건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다만, 발언한 위원들을 익명 처리할 수 있다.

② 각종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 11조 (주민의견조사의 실시) ① 시장은 시의 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사 후 즉시 주민의견조사의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공표한 후 1개월 이내에 조사결과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여야 한다.

제 12조 (주민참여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참여자치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 13조 (주민참여연구회) ① 시장은 중·장기적인 주민참여 체계 및 방안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연구·조사하기 위해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비영리민간단체 관계자, 행정 1부시장,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주민참여연구회를 15인 이내로 둔다.

② 제 1항의 주민참여연구의 기능은 국내외 주민참여제도 연구, 주민참여 기본조례 개정에 대한 연구 등 주민참여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다룬다.

③ 연구회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 한다.

② 각종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 11조 (주민의견조사의 실시) ① 시장은 시의 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사 후 즉시 주민의견조사의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공표한 후 1개월 이내에 조사결과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여야 한다.

제 12조 (주민참여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주민참여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 13조 (주민참여연구회) ① 시장은 중·장기적인 주민참여 체계 및 방안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연구·조사하기 위해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비영리민간단체 관계자, 행정 1부시장,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주민참여연구회를 15인 이내로 둔다.

② 제 1항의 주민참여연구의 기능은 국내외 주민참여제도 연구, 주민참여 기본조례 개정에 대한 연구 등 주민참여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다룬다.

③ 연구회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 한다.

④ 회의는 위원장이 주민참여와 관련하여 연구회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한다.

⑤ 연구회 회의 수당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민참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④ 회의는 위원장이 주민참여와 관련하여 연구회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한다.

⑤ 연구회 회의 수당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민참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 (적용례) 제 12조의 규정에 의해 최초로 수립하는 주민참여기본계획의 기간은 계획 개시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서울특별시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와 주민이 협력하여 민주적 협치를 실현하고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
3. “주민참여”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의사형성 단계에서부터 집행하는 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시와 주민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4. “협력”이란 시가 해야 할 책임과 주민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상호보완하고 협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① 주민참여는 주민의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해 누구든지 평등하게 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시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에 동등하게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삼는다.

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근거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와 주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이행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와 의무) ① 주민은 누구나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지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힘써야 한다.

② 시가 가진 정보는 주민의 공유 재산이며, 주민은 그 정보를 받아볼 권리가 있다.

③ 주민은 시정에 참가하지 않는다고 불리한 대우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제6조(위원회의 주민참여) ①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구성은 공모제나 추천제 등 공개적인 절차에 의한 일반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의 구성은 여성, 장애인 등 다양한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 분야의 남성 또는 여성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촉직 위원 정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법령 및 타 조례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공무원의 수는 3분의 1 이하로 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령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는 그 기능에 따라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정례화 하여 운영한다.

제7조(공청회 등의 주민참여) ① 시장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 결정에 대하여 법령 및 타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청회 또는 토론회에 사업이나 정책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8조(예산편성의 주민참여)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행정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9조(시정정책 토론 등의 청구) ① 주민은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 공청 및 설명회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시정정책에 대한 토론, 공청 및 설명회를 청구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있는 5,000명 이상의 주민 연서로 토론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
- ③ 시장은 토론, 공청 및 설명회가 청구된 주요정책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토론, 공청 및 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시장은 토론, 공청 및 설명회의 실무적인 개최 방안에 대하여 토론 청구인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개최한다.
- ④ 시장은 토론, 공청 및 설명회 결과를 성실하게 검토한 후 반영여부를 1개월 이내에 토론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한다.

- 제10조(회의공개의 원칙) ①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는 법령 및 타 조례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가 개최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의록 및 회의결과, 회의안건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다만, 발언한 위원들을 익명 처리할 수 있다.
- ② 각종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11조(주민의견조사의 실시) ① 시장은 시의 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조사 후 즉시 주민의견조사의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공표한 후 1개월 이내에 조사결과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여야 한다.

제12조(주민참여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주민참여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주민참여연구회) ① 시장은 중·장기적인 주민참여 체계 및 방안에 대한 기본계획을 연구·조사하기 위해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비영리민간단체 관계자, 행정1부시장,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주민참여연구회를 15인 이내로 둔다.

② 제1항의 주민참여연구회의 기능은 국내외 주민참여제도 연구, 주민참여기본조례 개정에 대한 연구 등 주민참여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다룬다.

③ 연구회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④ 회의는 위원장이 주민참여와 관련하여 연구회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한다.

⑤ 연구회 회의 수당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민참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최초로 수립하는 주민참여기본계획의 기간은 계획 개시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